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	----

제출년월일 : 1998. 8. 20  
제출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행코자 함.

### 2.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 행정자치부준칙안

##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략)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1. (현행과 같음) 2. ----- 85제곱미터이하인 ----- ----- ----- ----- ----- ----- ----- 3. (현행과 같음)